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22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문진석ㆍ이건태ㆍ김교흥

이정문 • 홍기원 • 한정애

복기왕 • 이연희 • 윤준병

이재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 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,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 킨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,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. 한편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'유지관리'와 '성능점검'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· 노인 · 장애인 등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다양한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17조, 제20조의2신설, 제28조, 제30조).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유지관리기준의 고시"를 "유지관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점검을"을 "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(이하 "유지관리 대상 건축물"이라 한다)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"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"을 "성능점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관리주체는"을 "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"를 "제1항에"로, "특별자치시장"을 "그 점검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자치시장"으로, "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경우 이에 따라야"를 "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, 개량, 보수, 수선,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(이하 "개선명령"이라 한다)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,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2(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 리기준을 준수하고,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
 - 2.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

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제17조제2항"을 "제17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30조제1항제1호 중 "제17조제1항"을 "제16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7조제2항"을 "제17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17조제3항"을 "제17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제17조제3항"을 "제17조제2항"으로 한다.

3의2.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 및 제30

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6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제16조(기계설비 유지관리) ① --고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 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----요한 유지관리 기준(이하 "유 지관리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. <신 설>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(이하 "유지관리대상 건축물"이라 한 다)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(이하 "관리주 체"라 한다)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17조(기계설비 성능점검) <삭 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 한 점검 및 확인 등) ① 대통 제>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 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"성 능점검"이라 한다)하고 그 점 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 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리대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
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
<u>관리주체는</u>
<u>②</u> <u>제1항에</u>
그 점검기록을 국토교
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특별자치시장
<u>여야</u>
③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
<u>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</u>
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
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
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
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, 개량, 보수, 수선,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(이하 "개선명 령"이라 한다)를 명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 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 군수 · 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 인하고,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, 노인,

제20조의2(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 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안전하고 적합하게

제21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)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, 기술인력의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한다.

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 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,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 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.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 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 적인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. 제21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 록 등) ① 제17조제1항-----

- ② ~ ⑦ (생 략)
- 제2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<신 설>
 - 2. ~ 4. (생 략)
- 제3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 - 2. <u>제17조제2항</u>에 따른 점검기 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작성한 자
 - 3. <u>제17조제3항</u>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신 설>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
적합하지 아니한 기계설비에
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
<u>니한 자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<u>제16조제2항</u>
2. <u>제17조제1항</u>
3. <u>제17조제2항</u>
3의2.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
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특별자
<u>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</u>
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보고하

4.	(생	략)
┶.	(6)	コノ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<u>제17조제3항</u>을 위반하여 점 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3. ~ 7. (생 략)
- ③ (생 략)

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
<u>한 자</u>
4. (현행과 같음)
②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17조제2항</u>
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